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2427
등록일자	2021. 12. 15.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목 차

I. 감사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 중점사항	1
II. 감사결과	2
1. 총 평	2
2. 지적사항	3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5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5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5
3. 감사결과 처분 기준(참고)	6
IV. 행정사항	7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I

개 요

1. 감사목적

- 우리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예산집행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이용을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1. 10. 05.(화) ~ 10. 20.(수)
- 대상부서 : 안전치수과
- 감사범위 : '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전반

[관내 홍제천 및 불광천 현황]

연번	하천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홍제천	사천교 ~ 홍지문	연장: 6.12km	지방하천
2	불광천	증산교 ~ 와산교하류	연장: 1.54km	지방하천

- 감사방법 : 서면, 시스템 및 실지(현장)감사 병행
- 감사장소 : 감사담당관 내 감사장
- 감사인원 : 6명(기술감사팀 4명, 외부전문가 2명)

3. 감사 중점사항

- 관내 하천 재난안전 관련 예경보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
- 산책로, 인도교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여부
- 하천분야 예산집행 및 시설공사 적정여부
- 기타 하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1. 총 평

이번 감사는 20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치수과에서 추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특정감사이다.

안전치수과에서는 우리구 소관 홍제천 약 6.12Km(사천교~홍지문), 불광천 1.54Km(증산교~와산교 좌안) 구간에 설치된 하천 진·출입로 총 77개소, 산책로·자전거도로 9.09Km, 인도교 7개소와 그 밖에 운동시설 및 인명구조함 등 재난(안전)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홍제천과 불광천은 이미 우리구의 대표적 주민 소통과 휴식의 명소로 자리 잡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눈높이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위주 점검 등을 통해 재해(안전)위해 요소 유무 및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 하였다.

감사 결과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설계변경 및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등 시설공사 예산집행 부적정(3건), 기전시설(비상벨) 유지관리 부적정(1건), 하천 호안유실 등 추가 보수가 필요한 사항(2건)이다.

안전치수과는 하천 이용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원활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세부내용을 보면 그동안 감사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 대부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감사사례 교육 및 전파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적사항

1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 「2018년도 ○○○○○○○○○공사(연간단가)」의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잔토·폐기물 중간처리장 운반에 따른 상차에 있어 기존 터파기·절취에 사용한 장비를 활용하여 상차가 가능한데도, 인력 상차물량으로 정산하는 등 신규비목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공사비 〇〇,〇〇〇천원을 과다 지출하였음

2 제설인원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면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 「2021년 ○○○○○○○○○공사(연간단가)」의 제설작업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단순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제설인원을 보통 인부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인부 단가를 적용하였음

3 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 2019년 「○○○○○○○○공사」를 통해 설치된 비상벨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 중 현장점검 결과 비상벨 총 3개소 중 1개소가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4 설계변경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5절 (설계변경 심사)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심사’ 를 받아야 함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사는 설계변경 심사’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공사」 를 시행하면서 3차례 설계변경으로 총 ○○○,○○○ 천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금액(○○○,○○○천원)이 최초계약금액(○○○,○○○천원)대비 10% 이상 증액(25.6%) 되었는데도 설계변경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홍제천 ○○○○○○○○ 설치공사』 등 3건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 안전표지판, 라바콘, 워카호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한 항목이 아닌데도 감액 없이 ○○○천원을 과다 지급 하였음

6 추가보수 지적사항

감사기간(2021.10.5.~10.20) 동안 외부전문가(2명)과 함께 홍제천(사천교~홍지문) 하천 시설물 시공 상태 적정여부 등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배수관로 부식, 유실된 호안 설치(보수) 지적사항이 조사되었다.

☞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추가보수 지적사항

연번	공사명	추가보수 지적사항	비 고
1	○○○○○○○○ 조성사업 (20**.*.**~20**.*.**)	· 유진상가 복개하부로 배수관로 부식 · 유진상가 측 하천호안(자연석) 유실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1. 12. 10.(금) 13:30
- 심의위원 : 5명(감사담당관 및 각 팀장)
- 심의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심의
- 심의결과 : 붙임1 참조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명)

연번	지 적 사 항	심의결과		
		처분 종류 ¹⁾ (안)	재정상 조치금액 (안)	신분상 조치인원 (안)
총 6건 (처분 총7건: 시정 5, 주의 2)		7	환수 〇〇〇	2
1	설계변경 공사량 적용 부적정	시정	환수 〇〇〇	
2	제설인원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시정		
3	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시정 주의		1
4	설계변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환수 〇〇〇	
6	추가보수 지적사항	시정		

1) 처분종류

- 시정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환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교정 및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훈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 처분기준(참고)

○ 징 계

- 「지방공무원법」 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공무원 신분상 조치]

- 훈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IV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조치방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붙임 2)에 따라 2개월 이내 조치하고 결과 제출
 - ※ 2개월을 초과하는 사항은 2개월 이내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 결과 제출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2022. 2. 22.(월)

- 붙 임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